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지침

제0차/제정 2013-10-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법률분쟁사건에 관한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소송대리인 및 법률고문의 선정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3조(소송사건등의 위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의 해당사건에 대한 청렴성, 전문지식, 소송수행 능력, 이해상충 여부, 관련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임되어야 한다.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② 전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무법인의 경우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에 한한다)는 제외하여야 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2. 공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를 한 자
3.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를 받은 자
4. 공사 임직원(사내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재직하다가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임직원으로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공사 재직 중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
6. 과거 공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되어 소송을 수행할 당시 그 업무를 게을리 하였던 자 또는 제3항

에 따라 저조한 평가를 받은 자

③ 공사 법무담당부서 및 의뢰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변호사 소송수행 평가기준에 따라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과정 및 그 결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대리인의 보수의 산정과 지급) 전조의 위임에 따른 수임료(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의 세부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수임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소송사건등의 결과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
2. 소송사건등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소송사건등의 난이도 및 소요기간
4. 소송사건등의 중요도

제5조(이해상충행위 방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호사등은 그 사실을 공사에 신고하고, 소송 수행 관련 직무회피 여부 등을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하게 된 경우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에 한한다)

1. 공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2. 소송상대방의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법무법인의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공사 법무담당자와의 협의 등) 등은 사전에 공사 법무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서의 예산을 활용하여 수임료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사 법무담당부서의 예산담당자와 협의하여 법무담당부서의 법무관리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 ① 부서장등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소송 위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서장
- ② 부서장등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소송 위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부

제3장 법률고문

제7조(법률고문의 선임) 공사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법률고문을 둘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법률고문의 공사 업무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공사와의 이해상충가능성, 사회적 평판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제8조(법률고문 선임계약 기간의 제한) ① 공사가 법률고문을 선임할 경우 그 계약기간은 1년 이하의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선정한 법률고문 변호사등의 청렴도, 성실도, 전문지식, 공사업무에 대한 이해도, 관련비용,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변호사등과 계약갱신을 거절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사는 그 변호사등과의 법률고문선임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계약기간은 1년 이하의 단위로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법률고문 선임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자문결과 평가를 참고 하여야 한다.

제9조(법률고문의 자문료) 공사는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부가가치세포함)를 지급

할수 있다.

제10조(법률고문 선임계약 해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법률고문선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1. 공사가 의뢰한 법률자문업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공사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는 등 공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부패행위를 하는 등으로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자문업무를 감소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률고문 선임계약을 계속 유지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6.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11조(사후관리) 공사 법무담당부서는 공사가 외부 법무법인 등에 자문을 의뢰하여 자문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법률자문절차 등) 룰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장등은 wink 법규정보시스템의 '법률자문'란에 자문요청의 배경, 질의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및 자문 건수를 감안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법률고문(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등에서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사안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등을포함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경우 그 추가 자문료는 법률자문요청을 한 부서의 예산으로 추가자문료를지급하여야 한다.

① 부서장등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법무담당자에게 법

②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사 법무담당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문의견

③ 전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의 기본법률고문료를 현저히 초과할

제13조(청렴서약서) 공사는 법률고문계약 체결 시 해당 변호사등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서식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3조 제2항 및 제5조의 규정은 이 장의 법률고문 선정에 준용한다.

부칙 (2013.10.30)

이 지침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소송수행평가기준)

<별표2> (법률자문결과평가표)

<별표3>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변호사 소송수행 평가기준

평가 부문	구분	평가기준	배점	평가 점수	비고
① 기본 점수	기본 배점	-			
② 감점 요인	수행 성실도 및 수행능력	청구금액 오류			
		보정사항 미이행			
		항소이유서 등 주요기한 미준수			
		패소판결문 송부지체 (도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			
	판결정본 등 송부지체 (판결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소계					
③ 가점 요인	승소 희박한 사건의 승소 및 판례의 변경 등 공사업무 기여도	공사가 원고인 사건 등의 승소(단, 무변론,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제외)			
		판례변경			
	소 계				
평가합계(①-②+③)					

* 소송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법률자문결과 평가표

1. 자문 건명 :

2. 법무법인 :

3. 평가표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평 가 항 목					
1. 자문의 정확성(2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 ----- ----- ----- -----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2. 자문의 유용성(20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 ----- ----- ----- -----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3. 자문의 적시성(10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회신기일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13일이내	15일초과
점 수	15점	12점	9점	6점	3점

종합평가(법무담당)

평 가 항 목				
o 자문의 난이도, 적시성,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50점)				
----- ----- ----- ----- -----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청렴서약서

당 법무법인(변호사)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의 ○○ 계약에 당 법무법인(변호사)은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4.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한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귀하